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98호
2022. 7. 25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2-2147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2147호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7월 25일
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 및 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상임위원회 신설·명칭 변경,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개방형 직위 지정·운영 전문위원 추가 및 명칭 변경(별표1)

가. (신 설) : 도시계획공간 수석전문위원

나. (명칭변경) : 도시계획관리→주택균형개발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 기획담당관,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가. 제출내용

(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팩스·이메일·등기우편

(1) FAX : 02-2133-0818

(2) E-mail : miffie7@seoul.go.kr

(3) 우편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5층

(4) 온라인 :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

다. 문 의 :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☎02-2133-6632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